

생애최초 특별공급 안내문

□ 소득증빙서류 안내

해당자격	소득증빙서류	발급처	
공 통	•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(만 19세 이상, 세대원 전원 발급)	국민건강보험공단	
근로자	일반 근로자	•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, 재직증명서(전년도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(매월신고 납부대상자확인)으로 발급)	해당직장 세무서
	신규취업자 / 급여내 전직자	• 급여내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, 재직증명서	해당직장
자영업자	일반과세자/간이과세자/면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사업자등록증사본	세무서
	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	•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(신고사실 없음) +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확인서)	세무서
	신규사업자	•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(부분) • 사업자등록증사본	국민연금관리공단/세무서
	법인사업자	•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, 법인등기부등본	세무서
보험모집인/방통판매원	• 전년도 사업소득 원천징수확인서 •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또는 당해회사의 월별 급여명세서	해당직장/세무서	
국민기초생활수급자	•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	주민센터	
비정규직 근로자 / 일용직근로자	•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서(직인날인)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(직인날인) • 상기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(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) ※ 근로 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	해당직장	
해당자격	소득증빙서류	발급처	
근로자	• 재직증명서 •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 또는 소득금액증명	해당직장/세무서	
자영업자	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•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(납세사실 증명서, 납부내역 증명서)	해당직장	

※ 상기 소득증빙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13자리 모두 포함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는 원본이 기본 원칙임.
 ※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아래의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의 년도 발급서류 [5개년도 이상이라 함은 통상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 가능합니다. (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)]

□ 구비서류 [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1.09.30. 이후 발행분]

구분	서류유형		해당 서류	발급대상	서류 발급 기준 및 유의사항
	필수	추가			
공동 서류	○		주민등록표등본	본인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, 주소변동사항, 세대구성 정보, 세대 구성원 정보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
	○		주민등록표초본		•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변동사항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
	○		가족관계증명서		•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(세대원 포함)를 포함하여 "상세"로 발급
	○		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		• 국내거주기간 확인 ※ 기록대조일을 생년월일 ~ 현재 까지로 설정
	○		신분증		•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, 여권 등
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	• 인감증명서 (본인 발급용)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, 인감도장
	○		청약통장잔액 확인서		• 인터넷 청약(청약 home)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
	○		복무확인서		•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10년 이상 장기복무근로인자격으로 신청한 경우
	○		해외체류(단신부임) 관련 증빙서류		• 『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』제4조제7항에 의거 당첨자(청약신청자)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직접(본인만)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 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	○		외국인 등록증과 국내 거주 신고 사실 증명서		배우자
○		주민등록표 등본	• 주민등록표 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		
○		가족관계증명서	•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[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 (뒷자리 포함) 전부 공개 "상세"로 발급		
생애 최초	○		소득세 납부 입증서류	본인	• 청약자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모집공고일 이전 5개년도 서류 (발급처 : 해당직장, 세무서)
	○		소득 자격요건 확인서		• 소득산정대상의 소득금액 등 소득자격 요건 확인서(건본주택 비치)
	○		혼인관계증명서		•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"상세"로 발급
	○		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	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	•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제출 (발급처 : 국민건강보험공단)
	○		소득증빙서류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증빙서류 ※ 배우자 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 전원 소득 입증 서류
	○		비사업자 확인각서		• 비사업자의 경우 [건본주택 비치]
	○		혼인관계증명서		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
	○		입양관계증명서		• 입양의 경우(또는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)
○		주민등록표초본	피부양직계존속	•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소변동사항, 개인인적사항 변경내용,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(1년 이상 연속 등재 확인)	
대리인 제출시	○		인감증명서, 인감도장	청약자	•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(대리인 인적사항 기재된 발급서류에 한함)
	○		위임장		•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, 건본주택 비치,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(본인작성 위임장에 한함)
	○		주민등록증, 인장		•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
부적격	○		부적격 소명서류	본인	• 등기사항 전부증명서, 건축물대장등본 등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

※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(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)임 ※ 상기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(2021.09.30)이후 발생분에 한함
 ※ 상기 서류이외에 사업주체는 신청자격의 확인을 위해서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
 ※ 서류접수 및 계약이후라도 주택소유 등 당첨자격 부적격으로 판명 될 경우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될 수도 있습니다.

※ 본 안내문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인쇄 및 편집과정에서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,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, 개정 공표로 인해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본 안내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시행 2020.09.29 일부개정 및 관련사항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※ 본 안내문은 단순 참고용이므로 입주자모집공고상의 내용을 숙지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라며, 청약자의 과실로 인한 낙점 및 부적격시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.